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당사는 정보·사무기기에 포함되는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프로젝터, 영수증 프린터 및 POS SYSTEM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 "프로젝터"가 2007. 03. 01통관 분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 될 예정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06호)"에 따르면 "프로젝터"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_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뿐 아니라 프로젝터를 제조하는 타사에서 IEC 60950으로 CB REPORT를 발행하는 상황입니다.

하기 건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프로젝터"의 안전인증을 위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군을 "10. 정보·사무기기"로 변경 또한 추가 가능 여부
2. 만약, 1항목이 가능 하다면 언제부터 IEC 60950의 CB REPORT를 이용하여 "프로젝터"의 안전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07.3.1일부터 안전인증 대상으로 적용되는 "프로젝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목분류에 9.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 프로젝트 안전성시험시 IEC60950(정보사무기기 안전성)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향후 동 시행규칙 개정시 10.정보·사무기기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프로젝트의 안전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K60950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